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

□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혁신 v. 규제

- 온라인 혁신 및 선택법(7p)은 사업자간 경쟁에 관한 행위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자기 선호에 대한 규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의 기업 결합 반경쟁성 추정(9p) 경쟁의 해석이 기존 개념과 다름 - 오히려 디지털 영역은 새로운 산업에 포함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
 - 사업 분리(10p) 카카오가 만약 택시 프랜차이즈와 같은 BM 을 운영시 미가입 택시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우려스러움, 그러나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 규제가 자꾸 도입되는 것 같아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14p)가 생김
- 교수님이 시사점(17p)에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이 미국은 법원에서 반독점 집행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입증책임 전환 등을 도입하여 법 집행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논의 중
 - 그러나 애초에 미국에서 독점과 카르텔이 문제되던 경쟁법 영역은 석유, 철도산업이었고, 이러한 전통산업에 적용되던 것을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려 하니 시장 획정부터 문제



- 또한, 디지털 중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부가통신산업의 경우도 기존의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진입 및 금지행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고, 타 산업과 다른 통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부처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음
 - ① 통신은 전 국민의 보편적 의무로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② 부가통신산업도 주파수라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통신망에 근거하여 운영
 - ③ 통신 이용자는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부가통신의 핵심인 콘텐츠 제작, 정보 유통 및 교환, 거래 등에 참여하는 프로컨슈머로서, 이용사업자로서 보호 대상이면서 최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
- o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통신 분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 5 호 사목 4)에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고, 2017. 8. 16. 이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7-4 호)가 제정되었음
- o 그 후 2021.9.23 에 부당성 판단의 예외 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와 같이 통신산업에 최적화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겠음



□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Coherence

- 영국의 거버넌스 협력 모델(21p) 참조 필요: CMA, Ofcom, ICO 의 규제 소관별 정책과 업무간 충돌, 중복 규제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기존의 전통 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데이터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제 4 차 산업혁명과 함께 초연결성, 지능성을 특징으로 하여 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자동차는 자율차로, 전자제품은 IOT 로, TV 방송은 OTT 로 전 생태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흐름임
 - 민간에서는 모두가 융합하여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는데, 정부만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영국의 사례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음
- 경쟁의 보장과 이용자 이익 보호는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과 효과에 의해 전통적인 경쟁법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23p), 이러한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경쟁당국과 소관 산업의 부처가 상이한 정책 목적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침 과기정통부에서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국회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간 정책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것임

